【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 공고 제2024 - 4호】

2024년도 제1차 공무직근로자(환경관리사) 채용시험 계획 재공고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2024년도 제1회 공무직근로자(환경관리사)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환경관리사	1명	· 청사 내·외부 청소 · 폐기물 및 재활용 처리작업 · 제초 등의 화단 관리 작업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0)

2.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결격사유)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다.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대검 훈령 제297호)

라.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규정(대검 예규 제1248호)

마. 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대검 운영지원과 제25124호)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최종(면접) 전형 예정일 기준)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18세 이상인 자(2006.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43조 정년(**환경관리사는 만 65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면접전형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전형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위 공통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응시 가능

나. 우대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관련 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 청소 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자
  - 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하여 인정**
경력증명서 상 ① 업체명 ② 근무기간 ③ 직위(직급) ④ 담당업무 ⑤ 근무형태(정규직 여부,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시간 명시), ⑥ 증명서 발급담당자의 소속성명·연락처 등이 정확히 기재
※ 경력 내용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
※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환경미화 등 직무 관련 분야 수상 실적 있는 자 또는 관련 분야 자격증 있는 자(건별 차등 배점)

☞ 수상실적은 훈 · 포장, 대통령 · 국무총리표창,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 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저소득층,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보조인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장애인증명서 및 복지카드 등 제출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자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장애인 중 중복 우대 불가

4. 전형방법

가. 제1차 전형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채용결격사유 여부,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서류전형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에 기술된 내용, 소지한 자격증 등을 토대로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담당예정업무와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서류전형 심사기준(평정요소)
1) 자기소개서 완성도, 2)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3) 직무경력 및 성과, 4)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5) 우대사항 6)감점사항

나. 제2차 전형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 면접방식 : 개별면접(단, 응시인원에 따라 집단면접 가능)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면접전형 심사기준

■ 업무에 임하는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더 많은 경우 1순위)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시험 일정

채용분야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공무직근로자 (환경관리사)	'24. 11. 20.(월) ~ 11. 27.(금)	'24. 12. 초순 합격자에 별도 연락	'24. 12. 초중순 합격자에 별도 연락	'24. 12. 중순 최종합격자에 별도 연락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홈페이지(www.spo.go.kr/hongseong), '알림마당' →고시/공고' 혹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채용정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4. 11. 20.(수) ~ 2024. 11. 27.(수) 09:00~18:00

※ 주말(토·일요일)은 방문접수 불가

※ 우편 접수는 수령확인을 위해 등기우편에 한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접수기간 전 및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 이후 도착분은 반송 처리)

※ 택배·퀵서비스 접수 불가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 또는 원서접수처에 직접(대리접수 가능) 제출

① 등기우편 접수
-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근로자(환경관리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개별 안내 예정)

②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접수처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층 총무팀 (☎041-640-4543)

※ [우 : 32226]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0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층 총무팀

7. 제출서류

①【필수】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별지 서식 제1호) 1부

②【필수】응시원서(별지 서식 제2호) 1부

③【필수】이력서(별지 서식 제3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④【필수】자기소개서(별지 서식 제4호) 1부

⑤【필수】직무수행계획서(별지 서식 제5호) 1부

⑥【필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서식 제6호, 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1부

⑦【필수】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초본은 공고일(2024. 11. 4.)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함

⑧【필수】직무관련 분야(응시자격 요건·우대사항) 자격증 사본 1부

※ 자격증 사본 미첨부시 자격 불인정

⑨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예정분야와의 유사성을 판단, 그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要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⑩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상훈자료,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등)

※ 서류 미비 시 해당사항 불인정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제출
※ 양면인쇄 금지,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클립 사용은 가능)

9. 근무조건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무기계약(정년 만65세)
- 월 보수액 : 약 190만 원 상당(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별도 지급)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통상 07:30~16:30, 점심시간 제외)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10.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및 증명서류의 미제출,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가 제출한 원본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채용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별지 서식 제7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제출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전형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 전형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전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각 전형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채용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총무팀 채용담당자(☎041-640-4543)

  ※ 상담 가능시간 : 오전 09:00 ~ 11:30, 오후 13:00 ~ 18:00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제14925호)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329호)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영구 임용결격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4.5.31.을 기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2022.11.24.), 2020헌마1605·2022헌마1276(병합) (2023.6.29.))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입법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인바, 이에 따르면 동법 개정 이후 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고, 임용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에 퇴직하게 됩니다. 정부입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검찰청법」 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붙임 2 직무기술서

직 무 기 술 서

직무분야 및 직급	채용예정기관명
공무직 근로자(환경관리사)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주요업무	○ 청사 내·외부 청소 및 환경미화 ○ 주변 환경정비에 관한 작업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기타업무(기관에 필요한 업무)
필요역량	○ **(공 통 역 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성실성, 과업이해력, 상황인식/판단력, 협조성 ○ **(직렬별 역량)** 전문성,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청사 내·외부 청소, 주변 환경 정비에 관한 작업, 기타 환경 미화 등에 필요한 전문지식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등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24년도 제1회 공무직 근로자(환경관리사) 채용시험 공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